

보장 범위 확장(2505) 특별약관

제1조 (보장 범위 확장 제도의 적용)

- ① 이 보장 범위 확장 특별약관의 적용대상 계약은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적용대상 상품 중 아래의 특별약관에 2024년 11월 1일 이후 가입한 유효한 계약으로 합니다.

1. 형사합의금 관련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보장확대)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상해보장확대)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보장확대)(비답승중 포함)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상해보장확대)(비답승중 포함)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답승중 포함)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보장확대)(비답승중)(추가가입용)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상해보장확대)(비답승중)(추가가입용)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답승중)(추가가입용)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보장확대)(비답승중Ⅱ 포함)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상해보장확대)(비답승중Ⅱ 포함)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답승중Ⅱ 포함)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보장확대)(비답승중Ⅱ)(추가가입용)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상해보장확대)(비답승중Ⅱ)(추가가입용)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답승중Ⅱ)(추가가입용) 특별약관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동승자 제외)(중상해보장 확대) 특별약관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동승자 제외)(중상해보장 확대) 특별약관

주) 위 특별약관이 갱신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2. 벌금 관련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Ⅱ(대인)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Ⅱ(대인)(비답승중 포함)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Ⅱ(대인)(비답승중)(추가가입용)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Ⅱ(대인)(비답승중Ⅱ 포함)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Ⅱ(대인)(비답승중Ⅱ)(추가가입용)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대인)(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대인)(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비답승중 포함)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대인)(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비답승중Ⅱ 포함)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대물)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주) 위 특별약관이 갱신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② 이 보장 범위 확장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사유 발생시 적용됩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으로 해당 법령 내에 조항이 신설된 경우.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에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1항1호의 형사합의금 관련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적용
2. 아래의 관련 법령(이하 「벌금 관련 법령」이라 합니다)의 신설 또는 변경된 경우. 단, 제1항2호의 벌금 관련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적용

보장확장의 유형	관련 법령(조항)
법령 내 조항의 신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내 조항의 변경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2조 (특별약관의 신설)

- ① 회사는 이 보장 범위 확장 특별약관 적용대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1조 제2항 1호를 근거로 공소 제기가 가능하게 되어 형사합의가 진행된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등의 특별약관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제1조 제2항 2호에 따라 받은 벌금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등의 특별약관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특별약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1. 제1조 제2항 1호의 개정된 조항의 내용이 제1조1항1호의 형사합의금 관련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연관된 경우
 2. 제1조 제2항 2호의 신설 또는 개정된 조항의 제1조1항2호의 벌금 관련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연관된 경우
 3. 신설 또는 개정된 조항의 내용이 보험에서 보장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신설된 특별약관의 안내)

- ① 제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을 신설하는 경우 회사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 아래의 사항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1. 신설된 조항에 의한 형사합의로 인해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이 신설된다는 내용
 2. 신설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보장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
- 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특별약관을 신설하는 경우 회사는 신설 또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 일 이후에 아래의 사항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신설 또는 개정된 조항에 따라 받은 벌금액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이 신설된다는 내용
 2. 신설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보장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신설된 특별약관의 적용)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제2조1항 및 제2조2항에 따라 신설된 해당 특별약관의 추가가입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한 경우 한하여 신설된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가 정한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5조 (적용보험료)

- 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설된 특별약관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설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신설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특별약관의 보험료 조정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특별약관에 대해 회사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가하지 아니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특별약관이 부가되는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